한부모가족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모 또는 부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의 지원, 복지자금 대여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1
1. 한부모가족 개관 4
1.1. 한부모가족 개념 4
1.1.1. 한부모가족의 의의 4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7
2.1. 지원대상자 7
2.1.1. 한부모가족 7
2.1.2. 조손가족 10
2.1.3.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11
2.1.4. 소득 기준 12
2.2. 한부모가족 신청 18
2.2.1.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18
3. 한부모가족 지원 21
3.1. 경제적 지원 21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21
3.1.2. 청소년한부모 지원 23
3.1.3. 복지자금 대여 26
3.1.4. 그 밖의 지원 27
3.2. 주거지원 30
3.2.1. 주택분양·임대 30
3.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2
3.3. 법률지원 35
3.3.1. 법률지원 35
3.4. 상담 및 정서지원 35
3.4.1. 상담 및 정서지원 35

1. 한부모가족 개관

1.1. 한부모가족 개념

1.1.1.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주택분양·임대

▹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참조).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 상담전화서비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1. 지원대상자

2.1.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쪽 참조).

▹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3쪽 참조).
>
> ·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9쪽 참조).
>
> <사례>
>
>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가요?
>
> A.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3쪽 참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5-48쪽 참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이혼 관련

Q.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5쪽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7쪽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0쪽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쪽참조 >

다문화 한부모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및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참조).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9쪽 참조).

연령산정 기준

▪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만 나이로 산정하며, 지원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9쪽 참조).

▸ 18세 미만의 경우: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다만, 자녀가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 22세 미만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0쪽 참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 취학 전 병역의무를 수행할 시 22세가 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지원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함(『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1쪽).

> ※ 지원대상 아동 여부
>
>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
>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0쪽 참조 >

2.1.2.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48쪽 참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 ※ 그 밖에 연령산정기준 및 취학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 출산지원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소득 기준

※ 아래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9쪽 참조).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6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 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0쪽 참조).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부모의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부모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합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개별 가구로 되어 있으나 부(父)는 자(子)에 대한 부양 의무자이므로 부의 소득은 2명 가구를 적용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3명 가구 적용).

· 위 부(父)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외)조모의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명 가구) 후 선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의 개별 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을 확인합니다(부모 1명, 자녀 3명일 경우 4명 가구 적용).

· 위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4명 가구)(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이는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1쪽 참조).

▹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합니다(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은 제외).

▹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62쪽 참조).

▪ 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

▹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82쪽 참조).

▹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①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0조에 따른 월정금

√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 1회 수령)

√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월평균 금액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위로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15만원 이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③ 근로소득공제

▹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가 근로 및 사업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에 반영합니다.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재산소득 환산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14~155쪽 참조).

①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일반재산

√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건물 분양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등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상품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②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지 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금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③ 부채

▹ 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④ 소득환산율

구 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조손가족)	월 1.04%	월 2.08%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2.2. 한부모가족 신청

2.2.1.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쪽).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3~35쪽 참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 국가나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

▪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3. 한부모가족 지원

3.1. 경제적 지원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명당 월 23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1쪽 참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2쪽).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1쪽 참조).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가족: 5세 이하 아동

▪ 자녀연령산정 기준: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 연령산정 기준일: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5쪽 참조).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7~4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1명당 연 10만 원이 지원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1쪽).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6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로서,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1쪽 참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쪽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3.1.2. 청소년한부모 지원

> ※ 아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181-193쪽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참조].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참조).

▹ (0~ 1세 영아) 40만원/월, (2세 이상 자녀) 37만원/월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국가나 지방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참조).

▹ (학원비)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학원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재비) 검정고시학습을 위한 지원한도 내에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지원한도 내에서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등·하교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만원의 교통비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복구입비) 지원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 동·하절기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촉진 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참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지원

▪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3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나목, 제17조의4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진단 신청 및 실시

▪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

3.1.3. 복지자금 대여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복지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금의 대여

▪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1항).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대여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 미소금융 안내(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금리	4.5%	4.5%	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운영자금 대출한도 3,000만원, 대출기간 최대 7년(거치 2년, 상환 5년)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신청

▪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추가서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http://womanbiz.wbiz.or.kr)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개-여성기업자금지원 참조).

· 아름다운 재단: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면서, ①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② 가구 전체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70% 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2026-2차(65회차) 참조).

3.1.4.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공증인 수수료 면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 신청 및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감경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의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 국가나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한부모가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촉진

▪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 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 복권사업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만,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함)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

한부모가족은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1인당 1연간 15만 원+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주거지원

3.2.1.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우선 분양

▪ 국가나 지방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2쪽 참조).

특별공급 대상

▪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3쪽).

▪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3쪽).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지방정부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및 접수

▪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4쪽).

>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9~358쪽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및 별표 1 참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25.12월말 기준 총 129개소(생활시설 116개소, 이용시설 13개소)(『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9~358쪽).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 정원
출산지원시설	21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6월(6월)	447명
	2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15명
양육지원시설	39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281세대
생활지원시설	45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2년)	904세대
일시지원시설	9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월(1년)	191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3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참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40쪽 이하 참조).

구분	지원내용
출산지원시설	·주거 및 식사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유아 양육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양육지원시설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생활지원시설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일시지원시설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시설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법률지원

3.3.1.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참조).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8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4. 상담 및 정서지원

3.4.1.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온가족보듬사업

-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정보-가족-온가족보듬사업 참조].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위기지원

>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 문의하세요.